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본 계약은 OK차트 프로그램 사용자(이하 "갑")와 공급자 (주)한메디(이하 "을")간에, 해당 제품의 사용 계약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 아 래 -

1. OK차트 사용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장에서 "을"에게 OK차트를 구입하고, "을"은 이를 공급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OK차트"란 "을"이 공급하는 OK차트 및 모든 관련제품을 의미한다.
- "유지보수료"란 OK차트 구입 후 매월 말일 자동 이체되는 OK차트의 월 관리 비용을 의미한다.
- "원격지원"이란 OK차트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접속을 통한 A/S 방식을 의미한다.
- "SQL 엔진"이란 OK차트에서 사용하는 Microsoft SQL Server Express Edition을 의미한다.
- "소유권"이란 "갑"이 "을"에게 OK차트 구입비용을 완납한 후 "갑"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 "사용권"이란 "갑"이 "을"에게 유지보수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갑"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 기간)

-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구입비용을 완납한 때부터 OK차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단, OK차트 저작권은 "을"이 소유한다.
- OK차트 사용 계약은 사용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매월 연장되며, 사용을 해약할 경우 "을"이 정한 소정의 절차 또는 양식에 의해 해약한다.

제4조 (양도·양수)

- "갑"은 OK차트의 사용 계약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양수인에게도 전과 동일하게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양수자는 "을"과 "OK차트 사용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CMS 자동이체 신청서", "OK차트 문자서비스 약관"을 작성해 체결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 (구입비용, 환불, 전자세금계산서)

- OK차트 구입비용은 "을"의 홈페이지 제품목록에 표시된 가격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 OK차트 구입비용 입금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은행 222-018918-01-030 (주)한메디 계좌로 입금한다.
단, OK차트 구입비용을 CMS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계약서작성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자동으로 이체된다.
- "갑"이 OK차트 구입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할 시, "을"은 초기설치비용 110,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7일~15일 이내 환불 요청할 시 초기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반환한다.
- OK차트와 관련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KT bizmeka 세무로에서 발행하며, 세무로 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는 이메일 주소의 @ 앞자리로 한다.

제6조 (설치, 사용교육)

- "을"은 "갑"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 OK차트를 원격지원으로 설치하며, "갑"에게 원격지원으로 사용교육을 수행한다.
- OK차트 설치 및 사용교육 비용은 OK차트 구입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 "갑"이 OK차트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는 모두 "갑"에게 있다.
- "갑"이 OK차트를 구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OK차트 사용교육을 1회에 한해 방문하여 실시한다(설치 후 초기).
- 방문 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내에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주말, 공휴일 제외).
- 양도·양수 또는 직원 교체 시에 OK차트 사용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방식은 원격지원으로 수행한다. 단, 양수자가 "을"에게 방문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출장비는 서울 및 수도권은 110,000원이며, 그 외 지역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7조 (유지보수료, 유지보수)

- OK차트 및 관련 제품의 유지보수료는 "을"의 홈페이지 제품목록에 표시된 유지보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 OK차트의 유지보수료는 "을"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을"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유지보수료 적용은 "갑"의 계약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매월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미 납부한 유지보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유지보수료는 매월 말일 "갑"의 CMS 자동이체 신청서의 계좌에서 납부된다.
- 유지보수료 미납요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에 연체 수수료 2%가 가산되어 CMS 자동이체 신청서의 계좌 또는 회수대행으로 납부된다.
- 유지보수료가 1개월 이상 연체될 시 연체안내 공지로 안내하고, 3개월 이상 연체될 시 유지보수 관계가 제한되어 OK차트 실행이 제한된다.
- 유지보수는 "을"의 원격지원 방식을 이용하며, 평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지원한다.
- 공휴일 및 휴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는다.
- 유지보수를 위해 "을"은 "갑"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이용하여 OK차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OK차트 업그레이드는 "을"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8조 (데이터 관리)

- "갑"의 사업장 내 컴퓨터에 설치한 OK차트 데이터의 백업 및 보안은 "갑"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 바이러스, 악성코드,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 "갑"은 정기적으로 OK차트가 설치된 컴퓨터를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 해지)

- OK차트의 계약해지 필요가 발생할 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시에는 1개월 전 상호간 통보한 후에 해지한다.
- 계약해지가 완료되면, "을"은 "갑"의 유지보수료 자동이체 출금을 중지한다. 단, 계약해지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유지보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 계약해지 이후에도 "갑"의 OK차트 소유권은 인정되며,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 (부 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 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준수 안내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 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전자 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OK전자서명 별도 구입 필요)
- 전자서명이 있을 후 전자 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 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OK차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력관리 기능 지원)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전자 의무기록의 백업저장 장비(외장하드 별도 구입 필요)

2.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장 내 설치된 OK차트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대표자명: (인)

